

의안번호	2201075
의 퇴 인	김예지의원
회 답 일	2024.08.19.
추 계 번호	24C137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기존 재정사업으로 실시하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사업을 대상의 확대와 동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하여 실시할 경우 발생하는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31억 6,000만원, 2029년 128억 6,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49억 4,000만원(연평균 129억 9,000만원) 국고 지출이 감소함¹⁾
- 다만, 건강보험은 국가재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건강보험의 실제 지출소요(향후 5년간 총 9,539억 9,000만원, 연평균 1,90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²⁾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금(A)	276.4	273.6	268.6	261.6	255.4	1,335.6	267.1
현행 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B)	408.0	412.3	399.7	381.0	384.0	1,985.0	397.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A-B)	-131.6	-138.7	-131.1	-119.4	-128.6	-649.4	-129.9

- 주: 1.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에 6~19세 아동·청소년을 추가할 경우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액과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고, 현행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유지 시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
2.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므로 본 추계서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에 비례하는 국고지원금 증가분만을 보고함. 참고로,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은 2025년 1,974억원, 2029년 1,824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9,539억원(연평균 1,908억원)임
3. 본 추계는 6~19세 아동·청소년이 현행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준용하여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다고 가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검진항목 및 단가, 검진주기, 수검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1) 본 추계의 결과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0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본 추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
- 2)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국고(일반회계, 기금)로 지원받고 있음. 따라서, 기존 전액 국고지원을 통한 재정사업이 건강보험으로 이관되면서 국고지원이 14%로 감소한 효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할 경우, 양출제입 원칙에 따라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할 후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므로 지출 증가분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A)	1,974.1	1,954.1	1,918.6	1,868.7	1,824.4	9,539.9	1,908.0
국고지원율(B)	14%					-	-
국고지원금(C=A×B)	276.4	273.6	268.6	261.6	255.4	1,335.6	267.1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 52조 (건강검진)	-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음 4. 아동·청소년건강검진: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신설)	재량지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 52조 (건강검진)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개정안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에 6~19세 아동·청소년을 추가할 경우 증가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액과 국가의 추가 재정소요를 산출하고, 현행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유지 시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추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 6~19세가 포함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일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 사업은 폐지되어 국가 재정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현행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및 영유아 건강검진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3조에 따라 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참고로,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아니므로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님³⁾. 다만, 건강보험 추가지출만큼 건강보험료 수입액 증가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며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⁵⁾⁶⁾
 - 한편, 법률 제19445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와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2027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추계기간 중 정부지원이 지속된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른 6세 이상 20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이 수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매년 받는다고 가정하고 해당 단가를 준용
- 현행 아동 및 청소년 건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생건강검사”와 「청소년복지 지원법」⁷⁾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3)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국가재정법」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정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건강보험 재정 자체는 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국고지원 금액만 그 대상이 됨

4) 건강보험료율 결정 절차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출 금액을 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 건강보험료 수입 규모를 추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함.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보험 지출에 따라 건강보험 수입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에 따르면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음(단,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

6) 2021~2023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평균 14%를 일반회계 및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였음

7) 법률 제2042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024.09.27. 시행 예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학생건강검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초1, 초4, 중1, 고1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이 검진기관과 계약을 통해 실시하며, 동 규칙 [별표 2]에 따른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등을 검진하고 비용은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검진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검진 항목을 준용하고⁸⁾, 검진비용은 여성가족부 예산으로 충당
- 각 학교의 장이 실시하던 아동·청소년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이관할 경우 공단의 전담인력 보장, 시스템 연계 등이 요구될 수 있으나, 공단의 기존 인력과 관리운영비 예산으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가정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 아동·청소년이 추가될 경우 증가하는 국고지원금에서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하는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8)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7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의 실시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이하 “건강진단등”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한다) 중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우선 대상으로 함

② 건강진단등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건강·체력 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검사 항목·방법에 따름

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및 국고지원금 증가분 추계

□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은 신규 건강검진 대상자 수(아동 및 청소년)에 검진 수검률과 검진단가를 곱하여 추계

- (대상자 수) 6세 이상 20세 미만 통계청 추계인구(2022.12.)에 건강보험 적용인구(가입자 및 피부양자) 비율을 곱하여 산출
- (검진 수검률)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영유아 건강검진 수검률 83.6%를 준용
 - － 검진 수검률은 「건강검진통계」의 검진 대상인원 대비 수검 인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추계에는 최근 3년(2020~2022년) 평균 통계청 추계인구 대비 건강보험 적용인구 비율(5~19세) 99.1%를 추가로 적용함
- (검진 단가) 2023년 기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연령별 1인당 검진 단가⁹⁾(연령 평균 36,780원)에 2024년 수가 인상률과 최근 3년 평균(2022~2024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1.66%) 적용
 -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연령별 단가는 9~11세까지 가장 높고, 그 이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기존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대상이 아닌 6~8세의 경우 9세의 단가를 준용

[표 2] 검진단가 추계: 2025~2029년

(단위: 원)

구 분	2023 실적치	2025	2026	2027	2028	2029
6~8세	—	43,827	44,555	45,295	46,047	46,811
9세	42,275					
10세	41,552	43,079	43,794	44,521	45,260	46,011
11세	40,697	42,191	42,892	43,604	44,328	45,063
12세	35,646	36,956	37,569	38,193	38,827	39,471
13세	35,539	36,845	37,456	38,078	38,710	39,353
14세	38,552	39,968	40,631	41,306	41,991	42,688
15세	37,943	39,337	39,990	40,654	41,329	42,015
16세	35,214	36,507	37,113	37,729	38,356	38,992
17세	35,886	37,204	37,822	38,450	39,088	39,737
18세	35,063	36,351	36,954	37,568	38,191	38,825
19세	33,263	34,484	35,057	35,639	36,230	36,832
평균	36,780	38,131	38,764	39,408	40,062	40,727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계산

9) 건강검진비는 학생의 본인부담금 없이 공단이 전액 부담하고 있음

- 추계결과, 6세 이상 20세 미만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건강보험 추가 지출은 2025년 1,974억 1,000만원, 2029년 1,824억 4,000만원 등 5년간 총 9,539억 9,000만원으로 추계됨
-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은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분에 국고지원율을 곱하여 산출
 -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양출제입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예상 지출 증가분만큼 예상 수입액이 증가하므로, 지출 증가분에 국고지원금이 연동된다고 가정
 - 국고지원율은 최근 3년(2021~2023년) 결산 상 실제 수입액의 평균인 14%를 준용

[표 3]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건강보험 지출(A)	1,974.1	1,954.1	1,918.6	1,868.7	1,824.4	9,539.9	1,908.0
국고지원율(B)	14%					-	-
국고지원금(C=A×B)	276.4	273.6	268.6	261.6	255.4	1335.6	26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현행제도 유지 시 국가 재정소요

- 현행제도 유지 시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건강검사”와 「청소년복지지원법」¹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
 - (학생건강검사) 사업 대상자(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를 추계하고 검진 수검률과 검진단가를 곱하여 산출
 - 학년별 대상자 수는 2023년 기준 통계청 추계인구에 교육부에서 제출한 당해연도 검진 대상 학생 수 비율(97.8%)을 곱하여 산출
 - 검진 수검률(99.3%)과 1인당 검진 단가(22,438원)는 2023년 실적치를 준용하고

10) 법률 제20422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24.09.27. 시행 예정)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진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최근 3년 평균(2022~2024년)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1.66%)을 적용
 - 교육부에 따르면, 2020~2022년은 코로나19로 검진을 실시하지 못한 학교가 다수 발생하여 검진 인원 및 비용 산출이 불가하므로, 실적치는 2023년 기준을 준용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여성가족부의 2024년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 예산을 준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
 -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세부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7억 6,200만원 예산을 배정
- 추계결과, 현행 제도 유지 시 국가 재정소요는 2025년 408억원, 2029년 384억원 등 5년간 총 1,985억원(연평균 397억원)으로 추계됨

[표 4] 현행 제도 유지 시 국가 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학생건강검사	400.2	404.4	391.6	372.7	375.5	1944.3	388.9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7.8	8.0	8.1	8.3	8.5	40.6	8.1
합계	408.0	412.3	399.7	381.0	384.0	1985.0	39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개정안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

-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국고지원금 증가분에서 현행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른 국가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31억 6,000만원, 2029년 128억 6,0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649억 4,000만원(연평균 129억 9,000만원) 국고 지출이 감소함

[표 5] 아동·청소년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국고지원금(A)	276.4	273.6	268.6	261.6	255.4	1,335.6	267.1
현행 제도 유지 시 재정소요(B)	408.0	412.3	399.7	381.0	384.0	1,985.0	397.0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A-B)	-131.6	-138.7	-131.1	-119.4	-128.6	-649.4	-129.9

주: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 국가지원금은 현행 영유아 건강검진의 수검률을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6~19세 아동·청소년이 현행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준용하여 건강검진을 매년 받는다고 가정한 결과이므로 향후 검진항목 및 단가, 검진주기, 수검률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